

#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1997. 7. 7.

장무재무위원외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7월 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7년 7월 1일
- 다. 상정일자 : 제4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97. 7. 7.)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조 병 하

###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97년도에 이루어질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의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개정골자

- 아래 재산을 아현2동 신청사 및 연남동 신청사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97년도 하반기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

- 아현2동 신청사 (건물 및 부지)

아현동 338-27 대지330.6㎡, 건물 956.17㎡

- 연남동 신청사 건립부지

연남동 515-24, -25 대지 531.5㎡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편성하여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동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아현2동 신청사 예정부지는 아현동338-27호상 대지 330.6㎡, 약 100평과 건물 956.17㎡, 연면적 약 290평의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이고, 연남동 신청사 건립예정부지는 연남동 515-24, 25호상 대지 531.5㎡, 약 161평을 97년도 하반기에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동청사 예정부지의 위치는 현 청사와 비교할 때 비교적 동내 중심부에 위치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 아현3동, 신공덕동 신청사 건립계획은 없는 가?
- 답변요지(홍 기 총무과장) : 현 아현3동 청사는 회의실 조차 없는 등 협소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인근지역의 개인주택을 매입하여 금년 7월에 착공, 연말에 완공해서 지하1층, 지상1,2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3층은 동민 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신공덕동은 재개발구역내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임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 아현2동 신청사 규모를 보면 지하 1층, 지상5층으로 계획돼 있는데 동청사를 굳이 크게 신축할 필요가 있는가?
- 답변요지(홍 기 총무과장) : 합리적인 사고로 검토하겠음.
- 질의요지(이진표 위원) : 관공사에 있어서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 답변요지(홍 기 총무과장) :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음.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신수동 청사도 이미 빗물이 새는 등의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답변요지(홍 기 총무과장) : 신청사 건립시 감리를 철저히 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공공기관 공사시에 감리를 감리자에게 일임하지 말고 해당 동장, 건축과 담당공무원, 지역 구의원등이 감리토록 하는 방안 강구

#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195
----------	-----

제출일자 : '97. 6.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97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동 청사의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 아래 재산을 아현2동 신 청사 및 연남동 신 청사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97년도 하반기에 취득코자 하는 것임.

- 아현2동 신 청사 (건물 및 부지)

아현동 338-27 대지330.6㎡, 건물956.17㎡

- 연남동 신 청사 건립부지

연남동 515-24, -25 대지531.5㎡

## 3. 근 거

-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5,069호) 제35조 제1항 제6호
- 지방재정법(1995. 1. 5. 법률 제4,868호)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1996. 6.29 대통령령 제15,093호) 제84조
-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1995. 3.25 조례 제287호) 제36조, 제37조
-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1994. 9.15 규칙 제186호) 제29조

첨부 : 공유재산관리계획 1부.

# 구유재산관리계획

'9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 6-1 )

회계명: 일반회계

( 2 - 1 )

(단위: m<sup>2</sup>, 천원)

구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계	토지	1	399.5	840,000	3	12,840.1	3,597,500	4	13,239.6	4,437,500	
		건물				1	956.17	750,000	1	956.17	750,000	
		기타										
	1.매 입	토지	1	399.5	840,000	3	12,840.1	3,597,500	4	13,239.6	4,437,500	
		건물				1	956.17	750,000	1	956.17	750,000	
		기타										
	2.교환으로	토지										
		건물										
		기타										
취 득	기타											
	3.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 구유재산관리계획

( '97년도 추가분 )

회계명: 일반회계

( 2 - 1 )

(단위: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득	계	토지			2	862.1	2,057,500	2	862.1	2,057,500	
		건물			1	956.17	750,000	1	956.17	750,000	
		기타									
	1.매입	토지			2	862.1	2,057,500	2	862.1	2,057,500	
		건물			1	956.17	750,000	1	956.17	750,000	
		기타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 2 - 2 )

(단위: m<sup>2</sup>,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처	계	토지												
		건물												
		기타												
	1.매 각	토지												
		건물												
		기타												
	2.양 여	토지												
		건물												
		기타												
3.교환으로	토지													
	건물													
	기타													
사 용 및 대 부	계													
	토지													
	건물													
	기타													
허	가													

# '97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6-2)

( '97년도 추가분 )

회계명: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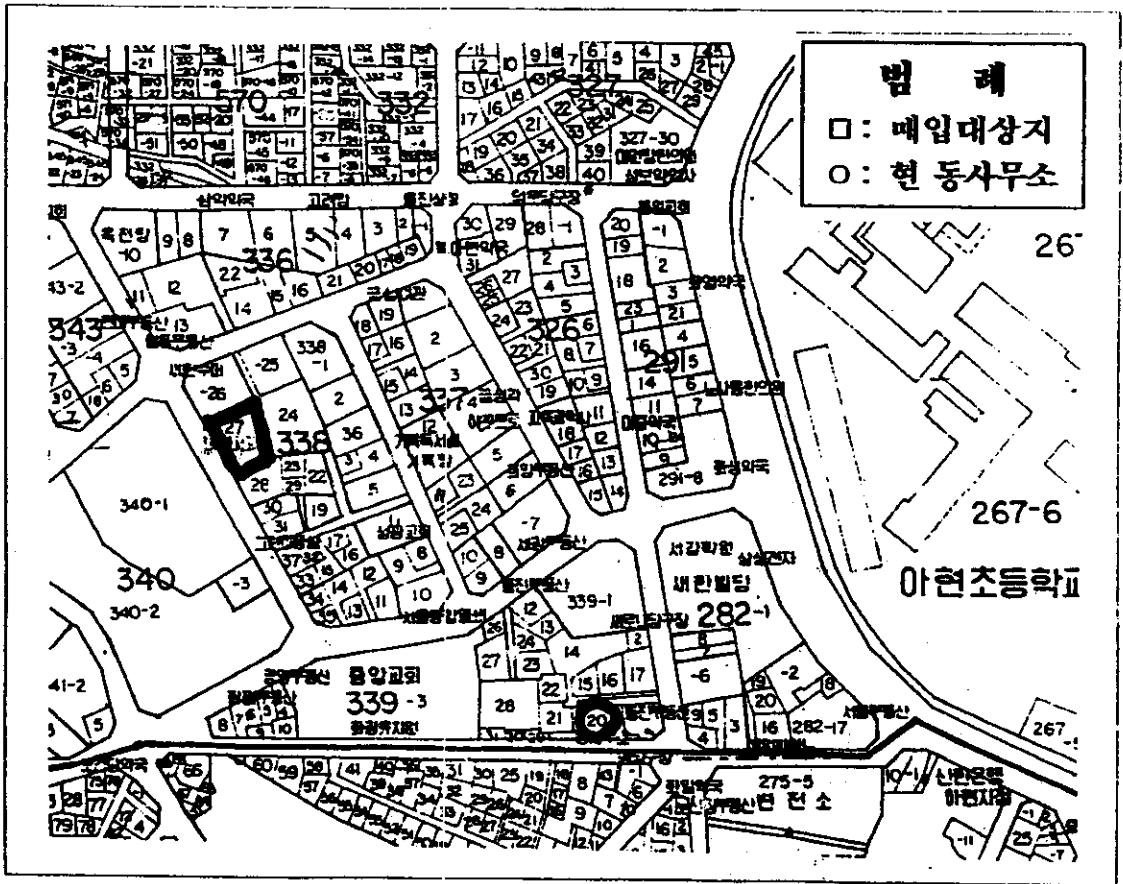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수 량					
1	대 지	아현동 338 - 27	320.3	850,000	'97 4/4분기	아현2동 신 청사 부지	서 경 만  (강남구 압구 정동 455번지 현대(A)71동 1005호)	매입
2	건 물	아현동 338 - 27	956.17	750,000	'97 4/4분기	아현2동 신 청사	서 경 만  (강남구 압구 정동 455번지 현대(A)71동 1005호)	매입
3	대 지	연남동 515 - 24 515 - 25	231.7 299.8 (531.5)	1,207,500	'97 4/4분기	연남동 신 청사 건립부지	판 회 자 외 4인  (경기도 고양 시 일산구 마 두동 794번지 강촌마을 806 책 301호)	매입
계	대 지 건 물		862.1 956.17	2,057,500 750,000  (합계: 2,807,500)				

# 취득하려는 재산의 위치도

## 1. 아현2동 신 청사 및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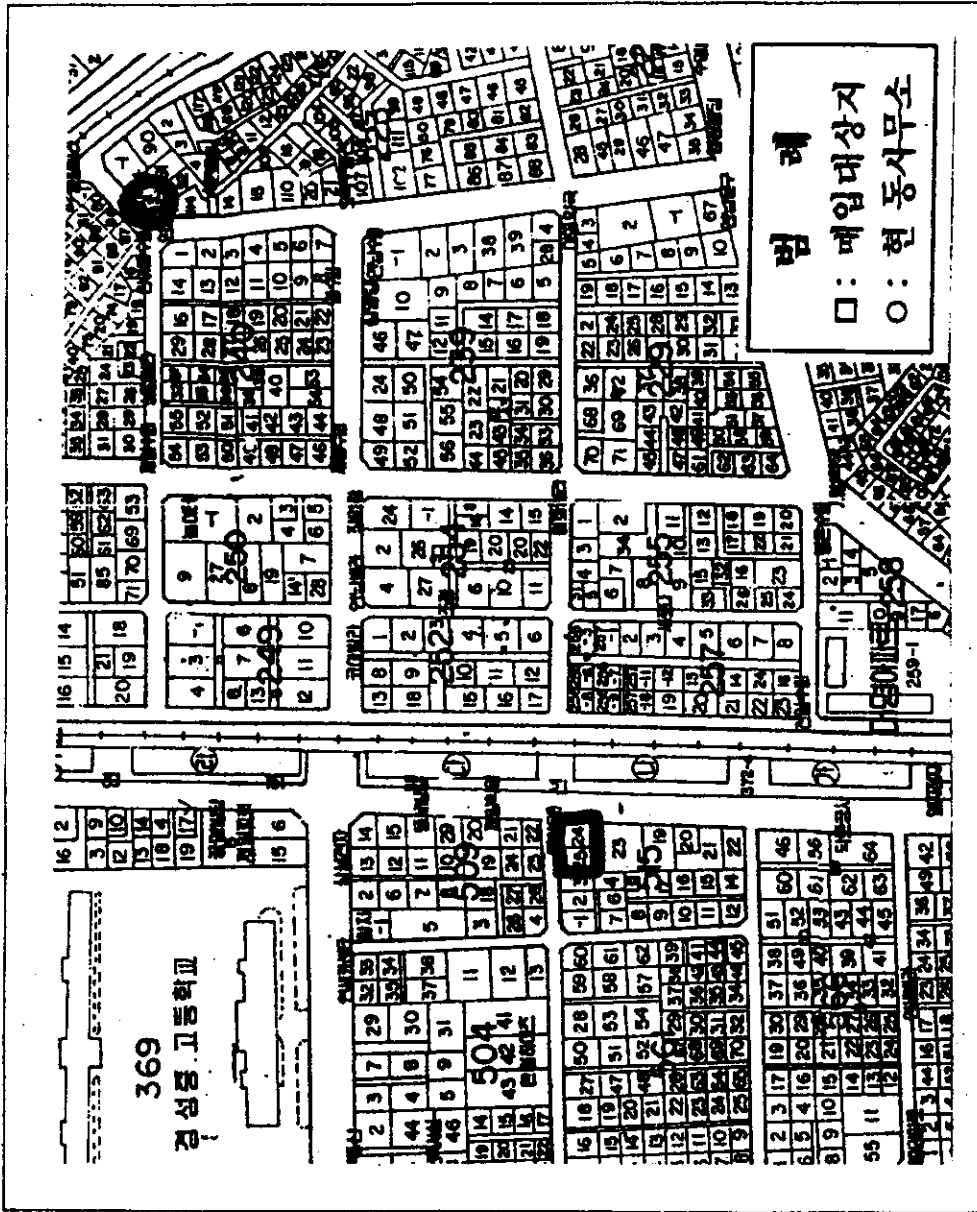
- 아현동 338-27 대 지 : 330.6㎡  
 건 물 :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층 수 : 지층-1, 지상-5  
 연면적 : 956.17㎡



## 2. 연남동 신 청사 건립부지

- 연남동 515-24, 대지 231.7㎡  
 515-25, 대지 299.8㎡ 계 531.5㎡





고유번호	1144010100-10338-0027		
토지소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시 번	338-27	축 척	1:600

### 토 지 대 장

도면번호	6	발급번호	970619-0014-01
장 번호	1-1	처리시각	09 시 25 분 03 초
비 고		작 성 자	정은하 ㉠

토 지 표 시		소 유 권						
시 번	면 적 (㎡)	사 유	변 동 일 자 변 동 원 인	주 소 성 명 또는 명 칭				
(08) 대	*330.6	(62)1964년 7월 3일 구획경리 완료  이 하 여 백	1994년 6월16일	강남구압구정동455현대아파트71-1005			등록번호	
			(03)소유권이전	서경만				
				이 하 여 백				
등록수정년월일	1986. 8. 1	1989. 1. 1	1990. 1. 1	1991. 1. 1	1992. 1. 1	1993. 1. 1	1994. 1. 1	1995. 1. 1
토지등기기준수확량(kg)	수경 203	수경 206	수경 214	수경 220	수경 226	수경 230	수경 234	

토 지 대 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 본 입니다.  
1997 년 6 월 19 일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수입물자가 첨부 소인되지 아니한 등본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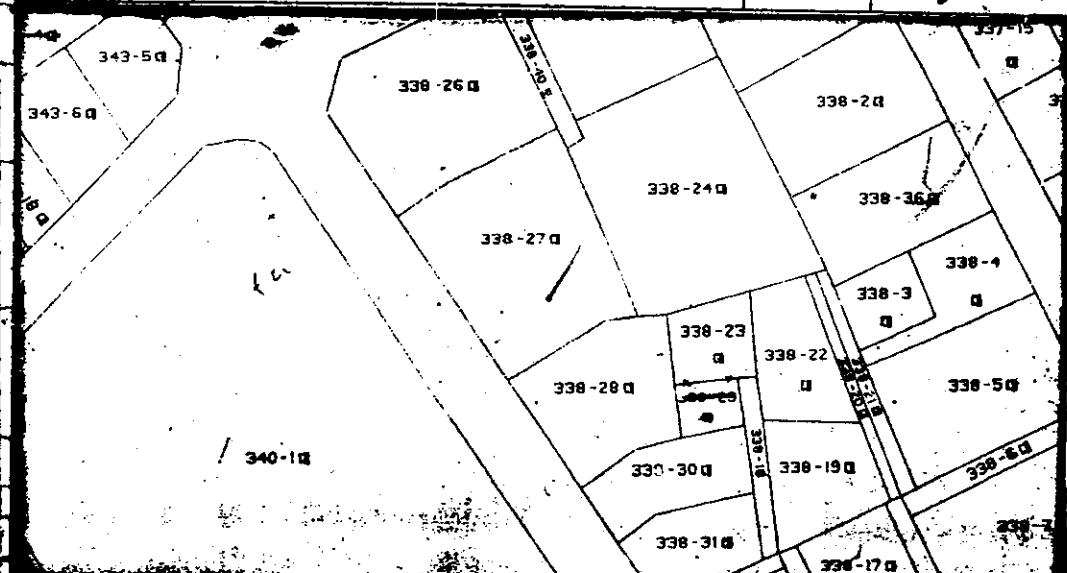
395

(第46回—第5次) 319

제상항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가한 일

대 상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현동 338번지**

확 인 내 역	①국토	용도지역	도시	개발계획동의 수립여부	
	②도	용도지역	(전용·일반·준)주거지역 (농림·일반·근린·유동)상업지역 (전용·일반·준)공업지역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시	용도지구	중위	미관(1.2.3.4.5종) 아파트·방화·도시설계 제도(취거·취고)·기타( )	
	계	도시계획시설	도로(지속·점함) 지정계건축선(지속·점함) 하천·공원·시장·학교·녹지·광장·기타( )		
	내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주거환경개선지구·시가지조성·기타( )		
	역	구 역	개발제한구역(내·지속)·기타( )		
용 기 타	도시계획일안사항				
	③~⑦	군사시설·농지·산림·자연공원·수도·해당없음.			
	⑧	토지거래	허가구역·신고구역·해당없음.	속적	500(600-1200-3000)
기 타				도면호수	호



본 도면으로는 면적측정 및 축척을 알 수 없습니다.

이하의 신청에 대한 취재의 부작업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본 도면의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건축물관리대장					비고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38 번지의 27 호					대지면적	허가년월일	준공년월일	등재년월일		
							84.5.19	84.11.24	84.11.26		
건축물현황							소유권				
구조	주용도	층별					사유	변동일자	소유자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또는상호	
		면적						변동사유			
							처리일자	처리일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근린생활시설 미주택	지층	1층	2층	3층	4층	신축 84.11.26	복아현동 123의63 창위동 219의460	李載喆 尹乙松		
		• 262.32	• 149.62	• 149.62	• 149.62	• 135.66					
		5층	계					84.10.2	장외동 219-460	尹乙松	
		• 109.33	• 956.17					동기에의한 소유권이동	강남구 44동 663-16	裴昌奉	
		(내역) 지층은 헬스클럽,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 3층은 사무실, 4층, 5층은 주택업						84.10.2	아현동		
								동기에의한 소유권이동	343의기	백종선	
								84.5.4	제기등		
								동기에의한 소유권이동	906.3000	李弘瑤	
								84.5.16	4동 102호		
								P.P.4	강화역동 2가 11-1001	徐京畝	
								동기에의한 소유권이동	강화역동 2가 11-1101	田再祿	
								P.P.4	11-1101		

건축물 대장에 의한  
등·초본입니다  
1997. 6. 1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구조	주용도	면적					사유	분동일자	분동사유	소유자주소	주민등록번호
		층	층	층	층	층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94.6.16 동기이외한 소유권이전	강남구압구정 동 455번지 현대아파트 71동 1005호		
								94.6.28		서경만	
특기		건축 39050 7117(94.8.24)위법건축물보통기종보통94.8.26정리 (수입중지가 인정(첨부)되지 않는 건물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				
사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기 1997년 06월 19일 (수입중지가 인정(첨부)되지 않는 건물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	1144012400-10515-0024		
토지소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지 번	515-24	축 척	1:600

토 지 대 장

도면번호	9	발급번호	970619-0013-02
장 번호	1-1	처리시각	09시 23분 02초
비 고		작성 자	전은하 (인)

토 지 표 시				소 유 권			
지목	면 적(m <sup>2</sup> )	사 유	변 동 일 자	주 소		등 록 번 호	
			변 동 원 인	성 명 또는 명 칭		등 록 번 호	
(08) 대	*231.7	(20)1975년 4월15일 분할되어 본번에 -25 울부함	1996년 3월25일	교양시일산구마두동794 강촌마을805-301			
		이 하 여 백	(03)소유권이전	권희자 외4인			
		이 하 여 백		이 하 여 백			
동급수정년월일	1986. 8. 1 수경	1989. 1. 1 수경	1990. 1. 1 수경	1991. 1. 1 수경	1992. 1. 1 수경	1993. 1. 1 수경	1995. 1. 1 수경
토지동급(기준수확량등급)	201	203	210	216	223	227	232



토 지 내장에 의하여 작성한  
본 장 입니다.  
1997 년 6 월 19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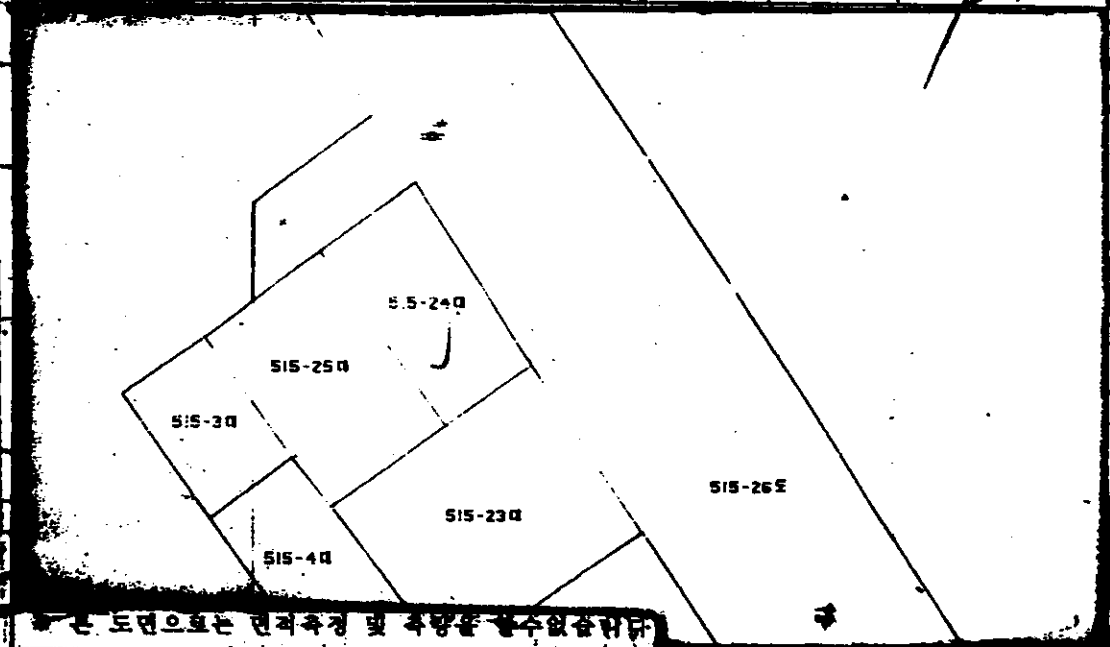
399

\*수입종지가 전부 소멸되지 아니한 농본은 그 효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第46回—第5次) 323

고유번호	1144012400-10515-0024		공유지연명부		장번호	1
토지소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지번	515-24
순번	변동일자	소유권지분	소유주		자등 록 번 호 상 명 호 는	
1	1996년 3월 25일 (03)소유권이전	3/11	고양지말산구마루동794 강촌마을805-301		편희자	
2	1996년 3월 25일 (03)소유권이전	2/11	양천구목동925 목동신시가지아파트702동402호		박정자	
3	1996년 3월 25일 (03)소유권이전	2/11	강남구대치동316 은마아파트17동309호		박영자	
4	1996년 3월 25일 (03)소유권이전	2/11	양천구신정동3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929동906호		박인혁	
5	1996년 3월 25일 (03)소유권이전	2/11	양천구신정동331 목동신시가지아파트1422동103호		박정희	
	년 월 일		이하 여 백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제출번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라기한	1월
대상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i>이동</i> 동 <i>HF</i> 번지 <i>가동</i> 호				
목적내역	① 국토	용도지역	도시	개발계획동의 수필여부	
	② 도	용도지역	(전용·일반·준) <i>용도지역</i> (중상·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 (전용·일반·준) 공업지역 (보전·생산·자연) 녹지지역		
	시	용도지구	중치... 미관(1.2.3.4.5종). 아파트. 방화. 도시설계 고도(최저.최고). 기타( )		
	인	도시계획시설	도로(지축.점합). 지정계건축선(지축.점합). 하천. 공원. 시장. 학교. 녹지. 공장. 기타( )		
	내	도시개발사업	제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시가지조성. 기타( )		
	역	구역	개발제한구역(내.지축). 기타( )		
용	도시계획일안사항				
	③~⑦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해당없음.			
기타	⑧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고구역. 해당없음.	축적	500.000. 1200. 3000
				드면호수	호



이 하의 사항에 대한 이해의 불확실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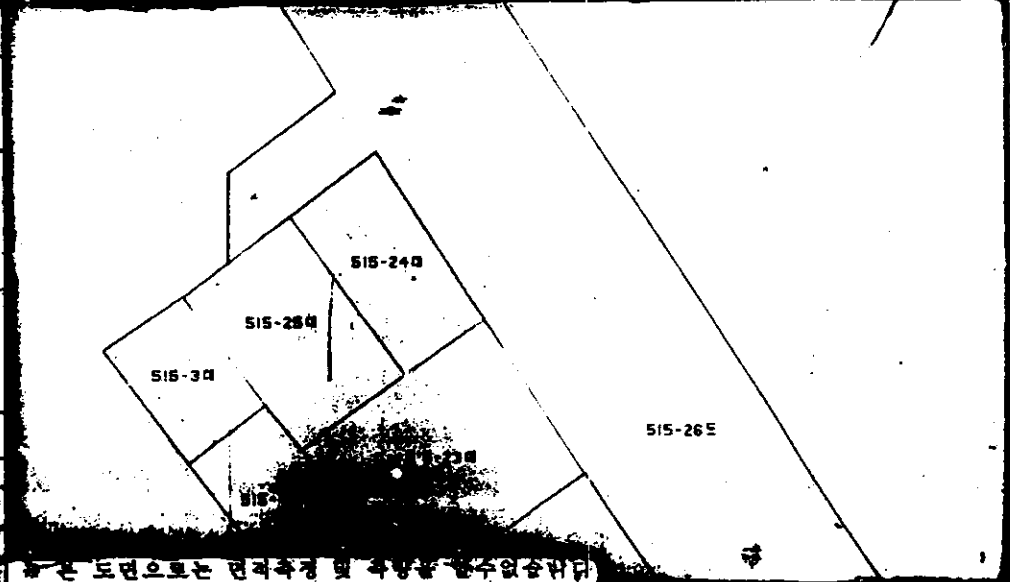




403

고유번호		1144012400-10515-0025		공유지연명부		장번호	1
토지소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지번	515-25	비고	
순번	변동일자 변동원인	소유권지분	주소	주 소	등 록 번 호 심 명 쓰는 면 칭		
1	1996년 3월 25일 (03)소유권이전	3/11	고양시일산구마우동794 강촌마을805동301호		권리자		
2	1996년 3월 25일 (03)소유권이전	2/11	양천구목동925 목동신시가지아파트702동402호		박경자		
3	1996년 3월 25일 (03)소유권이전	2/11	강남구대치동316 신파아파트17동309호		박영자		
4	1996년 3월 25일 (03)소유권이전	2/11	양천구신정동3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929동906호		박인희		
5	1996년 3월 25일 (03)소유권이전	2/11	양천구신정동331 목동신시가지아파트1422동103호		박관석		
	년 월 일		이 하 여 배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제출번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월
대상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i>AB</i> 등 <i>HA</i> 번지 <i>AB</i> 호			
특 인 내 역	① 국토	용도지역	도시	개발계획동의 수립여부	
	② 도	용도지역	(전용, <u>②</u> , <u>3</u> ) 주거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흥) 상업지역 (전용, 일반, 중) 공업지역 (보전, 생산, 자연) 녹지지역		
	시	용도지구	종차, 미관(1, 2, 3, 4, 5종), 이파트, 방화, 도시설계 고도(최저, 최고), 기타( )		
	계	도시계획시설	도로(차, 저속, 전함), 저정제건축선(저속, 전함), 하천, 공원, 시장, 학교, 녹지, 광장, 기타( )		
	역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시가지조성, 기타( )		
용	구	역	개발제한구역(내, 저속), 기타( )		
	도시계획임안사항				
	③~④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해당없음.			
⑤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고구역, 해당없음.		축적	500, 600, 1200, 3000
기	타			도면호수	<i>P</i> 호



본 도면으로는 면적측정 및 축척을 할수없습니다

이하여 신청한 다른 관계의 토지이용계획은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참조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